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재나532, 2012재나617(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7497, 2013다27503(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자 2012재나532, 2012재나617 결정

전 문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별지 (1) 원고(재심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재심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2. 9. 18.

판결 선고 2013. 2. 21.

주 문

1.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재심피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항소 취지 및 재심 청구 취지

1. 청구취지

별지 (2) 청구취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및 종전 재심사건의 재심청구취지

종전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1968. 2. 9. 선고 67나1001 판결)과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67. 3. 9. 선고 64가5133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사건의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이 사건 재심원고'라 한다)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종전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재심원고들의 지위

이 사건 재심원고들은 농민인 소외 망 A 외 84명과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67나100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하 '종전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원고들 중 1명인 소외 망 B(별지 (2) 청구취지 목록 기재 원고이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C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등

1) 서울 영등포구 D 답 416평을 비롯한 C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C 일대 토지'라 한다)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C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포·시행된 이후 이 사건 C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년 5월부터 이 사건 C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의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C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E수출산업공업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서울특별시는 1961년 8월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1962년 8월 내지 9월경 준공·입주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C 일대 토지에 E공단, F초등학교, G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다.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1) 이에 위 망 B를 비롯한 종전 재심대상사건 원고들은 1964. 6.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C 일대 토지 중 78,422평을 자신들이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1967. 3. 9.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5133호로 위 원고들 승소판결(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1968. 2. 9. 서울고등법원 67나1001호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종전 재심대상판결), 상고심법원도 1968. 7. 16. 대법원 68다804호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 당시 종전 재심대상사건 원고들 이외에도 소외 망 H외 42명 등 다수의 농민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C 일대 토지에 관하여 모두 9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위 망 H 등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소외 I가 제기한 위 법원 64가2625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등), 피고는 위 9건의 민사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였다.

라.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의 진행경과

1)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 중 위 망 H 외 42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1968. 3. 1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68다106호)로 피고 패소가 확정되자,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 23. '농지분배 서류의 조작사실을 인지하였다'며 위 민사소송에서 '농지분배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농림부 소속 공무원 소외 J을 구속하는 한편, 각급 기관 농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2) 피고 패소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1968. 7. 16.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68다804호)로 확정되자, 서울지방법검찰청은 1968년 8월경 수사에 착수하여 1968. 9. 20. 이미 사가·위증 피고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위 망 A, 소외 K, 망 L 외에 전 영등포구청 M, N 및 시흥군 O을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혐의로, 시흥군 공무원 소외 P, Q, 영등포농지위원 소외 R, S, T, U, 전 경기도 농지국 직원 소외 V 등을 위증 혐의로 각각 수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였다.

3) 서울지방법검찰청은 1968년 3월부터 1970년 7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C 일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과 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민사소송의 포기 또는 권리를 포기한 후 석방된 사람은 위 망 H 등 104명이었고, 구속된 후 기소 전에 소취하 또는 권리포기 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외 망 W 등 39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위 망 A 등 41명이었다.

4) 위에서 살핀 대로 이 사건 C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과 그 민사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증언을 한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총 41명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각 병합)호 판결, 위 법원 1974. 4. 26. 선고 68고단42609호 판결, 위 법원 1974. 6. 29. 선고 68고단42609호 판결]. 위 형사재판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74노5135호 판결), 상고심(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도550호 판결),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거듭된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79노5560호 판결, 위 법원 83노459호 판결, 위 법원 83노6971호 판결) 등을 거쳐 1984. 3. 13.에야 종결되었다. 위 41명 중 소외 망 X 등 12명에 대하여는 위 형사재판 도중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고지되었고, 소외 Y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위 P, Q에 대하여는 각 면소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26명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5) 종전 재심대상사건 원고들 중 위 망 A, 소외 망 Z, 위 망 X가 나머지 원고들과 공모하여 종전 재심대상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C 일대 토지 중 78,422평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위 망 A은 징역 1년 6월을, 위 망 Z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망 X는 위 형사재판 도중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리고 종전 재심대상사건 원고들 중 위 3명 외에 위 K, 소외 AA, 망 AB, 망 AC, 망 AD, 망 AE도 소송사기죄로 각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위 7명 중 위 망 AD, 망 AE은 상소심 재판 중 사망으로 각 공소기각결정을 고지받았고, 나머지 5명은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7명은 종전 재심대상소송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때문에 기소되었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었다. 한편 종전 재심대상사건 원고들은 아니지만 당시 공무원이었던 위 망 L는 종전 재심대상소송에서도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위 망 L는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형사지방법원 74노5135호 판결)].

마.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

- 1) 피고는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C 일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민사확정판결 중 종전 재심대상판결을 포함하여 피고 패소로 확정된 4건의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 2) 위 4건의 재심사건에 대한 당해 재심법원의 심리는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되었다가 위 형사소송이 종결된 후인 1984년에야 비로소 재개되었다.
- 3) 피고는 당해 재심법원에 형사판결서, 수사기록을 비롯한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 4건의 재심소송에서 모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4호 판결에서도, 피고의 종전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종전 재심대상판결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모두 취소되고, 종전 재심대상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 1)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와 그 유족들 중 일부를 비롯한 155명은 2006. 5.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
-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을 'C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으로 명명한 다음 1년여의 조사기간을 거쳐 2008. 7. 8. 위 형사사건의 성격을 국가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당시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 대하여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피고인·유족의 재심청구

1)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 26명 가운데 생존해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와 사망한 피고인들의 유족들 중 일부가 2009. 2. 4.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 진실규명결정 등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각 병합) 판결 등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26명의 피고인 중 23명에 대한 재심청구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1. 29. 2009재고단3, 6, 9(병합)호로 재심대상 피고인 23명 중 21명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형사재심판결'이라 한다). 다만 나머지 2명의 피고인(소외 망 AF, 위 망 L)의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위 2명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위 제1심판결이 아니라 항소심판결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 사건 제1 형사재심판결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1.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이 재심청구가 기각된 위 망 AF, 망 L의 유족들은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심판결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 9. 20. 선고 83노459 판결(위 망 AF), 위 법원 1975. 1. 26. 선고 74노5135 판결(위 망 L)을 각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차 각 재심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재노 25, 26호)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 27. 이를 모두 받아들여 위 망 AF, 망 L에 대하여도 각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3 형사재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3 형사재심판결 역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2.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종전 재심대상사건 원고들 중 일부의 재심청구

1) 종전 재심대상사건 원고 85명 중 48명(본인 내지 유족들)은 위에서 살핀 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형사재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자, 2012. 1. 4.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82호로, 2012. 3. 8. 위 법원 372(병합)호로 각 종전 재심판결, 즉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은 2012. 7. 20. 위 48명(본인 내지 유족들) 중 43명(본인 내지 유족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위 43명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종전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다만 위 재심의 소 중 일부는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는 참칭유족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2다76423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상고가 2012. 11. 29.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어 위 재심판결은 2012.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직무상 현저한 사실, 2012재나532호 기록상의 갑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각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2012재나617호 기록상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이 사건 재심원고들의 주장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피고의 종전 재심청구가 인용된 것은 당해 재심법원이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에서 위 망 Z 등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터잡아 종전 재심사건을 심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형사소송에 대한 재심소송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 26명 중 위 망 Z를 비롯한 23명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이 사건 제1 내지 3 형사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고, 피고의 종전 재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재심제기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1조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의 변경이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인 것이라야 한다. 1)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형사재심판결은 2011. 11. 29. 선고되어 2011. 12. 7.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 3 형사재심판결은 2012. 1. 27. 각 선고되어 2012. 2. 4. 각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재심원고들 중 6명[별지 원고(재심원고) 목록 제1 내지 제8항 기재 원고들]은 2012. 5. 21. 이 사건 2012재나532호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나머지 2명[별지 원고(재심원고) 목록 제9, 10항 기재 원고들]은 2012. 5. 30. 이 사건 2012재나617호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이 사건 제1 내지 3 형사재심판결이 각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한 점, ③ 위 망 B은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의 피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다가, 그 유족들인 이 사건 재심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제1 내지 3 형사재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그 각 확정일 무렵 곧바로 알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무렵에야 비로소 이를 알았다고 추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2012재나532호 기록상의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재심사건의 심리를 진행한 재심법원은, ① 종전 재심대상소송 담당 법원은 공무원인 위 O, M, N이 작성한 '군용지관리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와 '군용지에 대한 농지분배 상황조사의 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증인인 위 망 L, P, 소외 망 AG(AH의 오기이다)의 각 증언 등에 기초하여 그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점, ② 그런데 위 증인 3명 중 위 망 L는 종전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 때문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③ 또한 위 각 보고서는 위 O, M, N에 의하여 1953. 7. 2. 및 1953. 12. 13. 각 작성되었는데, 위 O 등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앞서 인정한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의 전체적인 진행경과에 비추어 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면 위 O 등도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삼아, 종전 재심대상판결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와 제7호 소정의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종전 재심사건에서 주장하였던 재심사유들은 모두 이 사건 제1 내지 3 형사재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그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의 종전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대상판결 및 이 사건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먼저 위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사유 중 위 망 L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유는 그의 아들인 소외 AI이 청구한 재심소송에서 위 망 L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사건 제3 형사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재심법원이 위증을 한 것으로 언급한 위 P, 망 AH은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위 P에 대하여는 파기환송을 거듭한 끝에 공소제기 후 15년 도과를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망 AH에 대하여는 항소심 재판 도중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이 고지되었다), 더구나 위 P, 망 AH의 증언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나 종전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사용된 바가 없으므로, 그들이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다른 민사소송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은 종전 재심사건에서의 직접적인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위 망 L를 제외한 피고인 22명(본인 또는 유족들)의 재심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위 22명에게 각 무죄판결(이 사건 제1, 2 형사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C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면 위 O 등도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을 추인한 위 재심법원의 논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오히려 위 O 등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22명과 마찬가지로 재심절차에서 구제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종전 재심대상판결에서 직접적으로 판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전 재심대상사건 원고 85명 중 위 망 A, 망 Z, 망 X가 나머지 원고들과 공모하여 종전 재심대상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C 일대 토지 중 78,422평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형사재판 도중 사망한 위 망 X를 제외한 위 망 A, 망 Z이 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위 재심법원이 피고의 종전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 Z에 대하여는 유족들의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무죄판결(이 사건 제1 형사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게다가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앞서 본 진실규명결정을 통하여 피고가 중앙정보부,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C 일대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는 농민들을 불법·강제 연행하여 감금 및 가혹행위를 하고, 석방을 전제로 민사소송의 포기와 권리포기를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소송사기죄, 위증죄 등으로 기소하여 형사처벌한 다음, 이미 패소로 확정되었거나 심리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승리로 이끌었으므로 피고는 관련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 마지막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종전 재심대상사건 원고 85명 중 46명(본인 또는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소송에서, 2012. 7.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가운데 위 46명 중 43명(본인 또는 유족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종전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2012. 12. 4.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이 사건 재심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종전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상준

판사심경

판사김태균

별지

1)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성립과 그 효력을 전제로 하여 판결을 하였을 경우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되었던 위의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고 또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045 판결 참조.